

의안번호	2208359
의 퇴 인	이용우 의원
회 답 일	2024.4.2.
추 계 번호	25B1028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적용 범위)	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에 적용함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4조(최저 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	<후단 삭제> -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규정
		<삭 제> -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5조(최저 임금액)	<삭 제> -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음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함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0조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)	<단서 삭제> -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5	안 제13조(위원회의 기능)	<삭 제> -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 2.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	의무규정
6	안 제19조(전문위원회)	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(적용 범위)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가사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사 사용인도 최저임금이 적용됨 - 가사 사용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던 가사 사용인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‘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’를 고용할 가능성이 미미하며, 가사 사용인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국가 재정소요 증가와 관련 있는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-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규정이 삭제되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-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5조(최저임금액)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4	안 제10조(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)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, 최저임금 적용 시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 제4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
5	안 제13조(위원회의 기능)	• 미대상 -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, 최저임금 적용 시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 제4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6	안 제19조(전문위원회)	• 미대상 - 현행법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- 개정조항은 최저임금 적용시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의 폐지를 규정한 동 개정안 제4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

2. 상세 사유

□ 현행 「최저임금법」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%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- 현행법은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수습근로자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¹⁾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수습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습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
-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해당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수와 이들의 임금수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1)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(단순노무 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으로,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(910),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(921), 배달원(922),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(930),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(941),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(942), 가사 및 육아 도우미(951),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(952) 등이 포함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